



## 부록 |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4학년도 시준6 제8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독서 \_\_\_\_\_ 90쪽

문학 \_\_\_\_\_ 98쪽

## 미디어의 의제 설정 효과에 관한 논의

### 지문 평가

평이한 글이다. 각각의 연구들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각각의 연구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만 분명히 챙겼으면 쉽다.

### 키워드

#### 사회 - 언론정보학 - 의제 설정 이론

의제 설정 이론, 의제, 의제 설정 효과, 맥콥스, 미디어 의제, 대중 의제, 정향 욕구, 주커, 의제 전이성, 쟁점의 두드러짐

### 문단 1 의제 설정 이론

현대 사회의 대중은 주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 대중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이 어떠한지에 관해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 **의제 설정 이론**도 그중 하나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는 사회적 쟁점인 **의제**를 설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의제 설정 효과**란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보도함에 따라 대중의 마음에 특정 쟁점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을 말한다.

▶ '의제 설정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는 '의제 설정 효과'를 낸다. 미디어가 어떤 사회적 쟁점을 반복적으로 보도함에 따라, 대중의 마음에 해당 쟁점이 중요하게 부각된다는 것이다.

Ⓢ 맥락 짚기 첫 문단을 읽을 때에는 인식적으로 글의 초점을 파악하려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마땅한 초점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는 글의 화제로서 '의제 설정 효과'가 주어졌다는 사실만 챙기고 넘어가면 된다.

### 문단 2 맥콥스의 연구

1) 이전의 미디어 연구가 쟁점에 대한 대중의 가치 판단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했다면, 의제 설정 이론은 쟁점의 생성 자체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에 주목한다.

Ⓢ 맥락 짚기 '이전의 미디어 연구'와 '의제 설정 이론'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의제 설정 이론'이 이전의 연구들과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결국에는 '의제 설정 이론'이 글의 화제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 이전의 미디어 연구                             | 의제 설정 이론               |
|----------------------------------------|------------------------|
| 쟁점에 대한 대중의 가치 판단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미디어의 역할 | 쟁점의 생성 자체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 |

▶ 이전에는 쟁점의 생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미 생성된 쟁점'에 대한 대중의 가치 판단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에 관심을 두었을 뿐이다. 이와 달리 '의제 설정 이론'에서는 애초부터 '쟁점의 생성'에 관심을 둔다.

2) **맥콥스**의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미디어 의제**와 대중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대중 의제** 간에는 **정적(正的)** 상관관계가 있다. 미디어에서 중요하게 다룰수록 대중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 의제 설정 이론과 관련된 '맥콥스'의 연구다. 그에 따르면 '미디어'가 어떤 의제를 중요하게 다루면, '대중'도 이를 중요시한다. 즉 '미디어 의제'와 '대중 의제'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3) 이 상관관계를 인과 관계로 볼 수 있다고 여긴 맥콥스는 그 근거로 정향 욕구를 들었다. **정향 욕구**란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욕구로, **현대인의 높은 정향 욕구**로 인해 미디어의 의제 설정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 주목 맥콥스는 더 나아가 이를 '인과 관계'로까지 보았는데, 왜 상관관계에 머물지 않고 '인과 관계'로까지 바라보았는지가 중요하다.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어떤 의제가 '미디어 의제'로 설정되었기에 그것이 '대중 의제'가 된다는 뜻이다. '의제 설정 이론'은 미디어에 의한 쟁점의 생성 자체에 관심을 두었으므로[문단2-1], '인과 관계'가 성립해야만 미디어의 영향으로 '대중 의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 맥락 짚기 '정향 욕구, 의제 설정 효과' 간의 관계가 주어졌으니 정리해 두자. 간단해 보이더라도 미리미리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혼동이 없다.

대중의 정향 욕구 ↑ ⇨ 의제 설정 효과 ↑

▶ 인간은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그 불확실한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를 '정향 욕구'라 한다. '맥콥스'에 따르면 의제 설정 효과 역시 '정향 욕구'가 높으면 크게 발생한다. 불확실한 환경에 의미를 부여할 때 '미디어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4) 그에 따르면 정향 욕구는 미디어 의제에 대한 개인의 관련성 정도와 미디어 의제에 대한 개인적 판단의 불확실성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불확실성에 상관없이 관련성이 낮으면 정향 욕구가 낮고, 관련성과 불확실성이 모두 높으면 정향 욕구도 높다. 관련성이 높고 불확실성이 낮으면 정향 욕구는 중간 수준에 머문다.

Ⓢ 주목 '정향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주어졌다. 결국 '의제 설정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 잘 정리해 두자.

|         | 관련성 높음   | 관련성 낮음   |
|---------|----------|----------|
| 불확실성 높음 | 정향 욕구 높음 | 정향 욕구 낮음 |
| 불확실성 낮음 | 정향 욕구 중간 | 정향 욕구 낮음 |

▶ '맥콥스'에 따르면 '의제 설정 효과'는 관련성, 불확실성이 모두 높은 개인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관련성 ↑, 불확실성 ↑ ⇨ 정향 욕구 ↑ ⇨ 의제 설정 효과 ↑

### 문단 3 의제 설정 효과에 관한 주커의 연구

1) 의제 설정 효과가 모든 쟁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님에 주목한 **주커**는, 수용자의 성향보다는 **미디어 의제의 성격**에 따라 의제 설정 효과가 달라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 '맥콥스'는 미디어의 영향에 의해 '대중 의제'가 설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는 '정향 욕구' 때문으로, 정향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자의 성향[→ 관련성, 불확실성]에 대해 탐구하였다[문단2].

▶ 반면 '주커'는 수용자의 성향에 관심을 두는 대신, '미디어 의제의 성격'에 관심을 두었다. 즉 그 성격에 따라, 의제 설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쟁점도 있다는 것이다.

Ⓢ 맥락 짚기 새로운 연구로 '주커'의 연구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맥콥스'의 연구와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맥코스                     | 주커                         |
|-------------------------|----------------------------|
| 수용자의 성향에 따른<br>의제 설정 효과 | 미디어 의제의 성격에 따른<br>의제 설정 효과 |

2) 그에 따르면 미디어 의제가 대중 의제로 전이되는 **의제 전이성**이 나타나는 데에 있어 쟁점의 '두드러짐' 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쟁점의 두드러짐**이란 사람들이 쟁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경험한 양으로, 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하여 익숙한 쟁점일수록 두드러진 쟁점에 해당한다. 예컨대 물가 변동, 실업, 범죄 등은 두드러진 쟁점이며, 국제 관계나 환경 문제 등은 두드러지지 않은 쟁점이다. 주커의 연구에 따르면 대중이 직접 경험하기 힘든 문제일수록 의제 설정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 쉽게 말해서, 미디어 의제의 성격이 '두드러지지 않은 쟁점'일 때 '의제 전이성'이 잘 나타나서, '의제 설정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 두드러진 쟁점                             | 두드러지지 않은 쟁점                     |
|-------------------------------------|---------------------------------|
| 자주 경험하여 익숙한 쟁점<br>예 물가 변동, 실업, 범죄   | 직접 경험하기 힘든 쟁점<br>예 국제 관계, 환경 문제 |
| '의제 전이성'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br>의제 설정 효과 ↓ | '의제 전이성'이 잘 나타나서,<br>의제 설정 효과 ↑ |

#### 문단 4 쟁점의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

1) 한편, 최근의 미디어 연구자들은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도 어떤 면이 중점적으로 보도되느냐에 따라 의제 설정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밝혔다. 두드러지지 않은 쟁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대상으로 한 실험적 연구에서,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 중 어느 쪽을 강조했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난 것이다.

☞ 맥락 짚기 새로운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맥코스, 주커'의 연구와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 '두드러지지 않은 쟁점'은 주커의 연구에 따르면 그 자체로 의제 설정 효과가 높게 나타나야 한다[문단3-2]. 그런데 실제로는 보도 방식에 있어서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

2) 온난화 현상의 과학적 진실을 분석하는 등 **인지적 요소**에 주안점을 두고 보도했을 경우에는 의제 전이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온난화 문제에 대한 경쟁적 시각, 즉 경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논쟁을 촉발하는 등 **정서적 요소**를 부각하여 보도했을 경우에는 의제 전이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미디어의 의제 설정 효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인지적 요소'를 부각하면 의제 전이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의제 설정 효과'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문단3-2]. 반면 '정서적 요소'를 부각하면 의제 전이성이 잘 나타나서, '의제 설정 효과'도 잘 나타난다.

'인지적 요소'를 부각 ⇒ 의제 전이성 ↓ ⇒ 의제 설정 효과 ↓  
'정서적 요소'를 부각 ⇒ 의제 전이성 ↑ ⇒ 의제 설정 효과 ↑

#### <보기> 분석

##### <보기> 문단

한 모임에서 미디어의 의제 설정 효과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미디어 수용자들의 반응은 **맥코스의** 연구 결과와 부합했다. 이 실험에서는 미디어 의제에 대한 개인의 관련성 정도(높음/낮음), 미디어 의제에 대한 개인적 판단의 불확실성 정도(높음/낮음)의 조합을 달리 하여 피실험자들을 크게 네 집단으로 나누었다. 집단 1과 집단 2는 의제 설정 효과가 낮게 나타났고, 집단 4는 집단 3에 비해 의제 설정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 맥락 짚기 미디어 수용자들의 반응이 '맥코스'의 연구 결과에 부합했으므로 문단2를 주로 참고해야 한다.

➡ 집단 1, 2는 의제 설정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의제 설정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정향 욕구'가 낮기 때문이겠다[문단2-3]. 집단 1, 2는 모두 '관련성이 낮은 집단'에 해당한다. 그런데 집단 4가 집단 3보다 의제 설정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집단 3이 '중간 수준의 정향 욕구'를 갖고, 집단 4가 '높은 수준의 정향 욕구'를 갖는다는 뜻이다[문단2-4]. 즉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         | 관련성 높음         | 관련성 낮음               |
|---------|----------------|----------------------|
| 불확실성 높음 | 집단 4: 정향 욕구 높음 | 집단 1, 2:<br>정향 욕구 낮음 |
| 불확실성 낮음 | 집단 3: 정향 욕구 중간 |                      |

∴ 집단 3, 4는 공통적으로 관련성 정도가 '높다'. 따라서 ③번 선지는 적절하다.

##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IEC)

## 지문 평가

크로마토그래피의 한 종류인 IEC의 원리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글이다. 까다롭지만 필요한 정보들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고 있다. 중간에 맥락을 놓쳤다면, 글을 쫓아가기가 상당히 버거웠을 것이다. 독해 연습하기에 좋은 글이니, 충분히 연습해 두자.

## 키워드

## 과학 - 생화학 - IEC

단백질, 혼합물, IEC, 크로마토그래피, 이동상, 분리관, 정지상, 전하, 척력, 인력, 전하량, 아미노산, 아미노기, 수소 양이온, 환원, 카르복실기, 산화, pH값, 중성, 아미노산의 등전점, 폴리펩티드, 단백질의 등전점, 카운터 이온

## 문단 1 단백질 분리의 필요성

산업 생산이나 연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는 배양 세포에서 **단백질**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시료는 여러 종류의 단백질을 포함하는 **혼합물**이어서, 이로부터 특정 단백질을 분리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IEC)**가 있다. 이는 단백질의 전하와 전하량이 단백질의 종류나 주위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 **맥락 짚기** 기술 지문에서는 되도록 목적과 원리를 글의 초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IEC'는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포함된 '혼합물'에서 '특정 단백질'을 분리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단백질의 '전하, 전하량'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원리로 한다. 이를 통해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글을 읽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 IEC의 목적 : 혼합물에서 특정 단백질을 분리해 내는 것
- IEC의 원리 : 단백질의 종류나 주위 환경에 따라 전하, 전하량이 달라짐

## 문단 2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

1) **크로마토그래피**는 액체나 기체 상태의 **이동상**에 혼합물을 녹인 후 **분리관**에 천천히 통과시켜 혼합물의 성분들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분리관에 고정되어 있는 **정지상**과 혼합물의 성분들이 상호 작용 하는 정도에 따라 **이동 속도가 달라지면서** 각 성분들이 분리되는 것이다.

➡ 'IEC'는 '크로마토그래피'의 일종인데, 그 작동 과정을 대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분리되어야 하는 대상인 '혼합물'은 이동상과 함께 이동하면서 '정지상'과 접하게 된다.

☞ **주목** 관건은 이때 혼합물에 섞여 있는 각 성분과 정지상의 상호 작용 정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IEC에서는 혼합물을 이루는 각 단백질이 정지상과의 상호 작용 정도가 다르다는 것일 텐데, 이는 그 원리를 고려했을 때 '전하, 전하량'과 깊은 관련이 있겠다.

2) IEC는 분리관 내부 표면에 **전하**를 띠는 물질을 도포하여 정지상으로 사용한다. 단백질이 정지상과 같은 전하를 띠면 정지상으로부터 밀어내는 **척력**을 받아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다른 전하**를 띠면 잡아당기는 **인력**에 의해 이동 속도가 느려진다. 이때 단백질의 **전하량**이 클수록 이동 속도의 변화량은 더 커진다.

☞ **맥락 짚기** IEC의 원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다. 즉 '전하, 전하량'이 단백질과 정지상과의 상호 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대목에서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주어진 개념들 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므로, 특히 유의하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정지상과 전하가 같음 ⇨ 단백질의 이동 속도 ↑  
정지상과 전하가 다름 ⇨ 단백질의 이동 속도 ↓

단백질의 전하량 ↑ ⇨ 단백질의 이동 속도 변화량 ↑

➡ 우선 '전하'에 대해 살펴보자. 단백질과 정지상의 전하가 같으면 '척력'이 작용하여, 빠르게 이동하고[→ 분리관을 먼저 통과하고], 단백질과 정지상의 전하가 다르면 '인력'이 작용하여 천천히 이동한다[→ 분리관을 나중에 통과한다].

➡ 이어서 '전하량'에 대해 살펴보자. 이는 이동 속도의 '변화량', 즉 얼마나 천천히 또는 빠르게 이동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똑같이 정지상과의 전하가 같은 단백질이라도 '전하량'이 클수록 더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다.

☞ **주목**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떠올려 보자. 다음 네 단백질이 섞인 혼합물이 IEC의 분리관을 통과하는데, 정지상은 '음전하'를 띠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전하가 같아서 척력이 작용하는 C, D는 이동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반면 전하가 달라서 인력이 작용하는 A, B는 이동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그리고 C, D 중에서는 '전하량'이 더 큰 D가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정도가 더 클 것이다. A, B 중에서는 '전하량'이 더 큰 B가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정도가 더 클 것이다. 즉 결과적으로 분리관을 통과하는 순서는 'D, C, A, B'가 된다.

|       | 전하  | 전하량의 상대적 크기 |
|-------|-----|-------------|
| 단백질 A | 양전하 | 1           |
| 단백질 B | 양전하 | 2           |
| 단백질 C | 음전하 | 3           |
| 단백질 D | 음전하 | 4           |

3) 일부 단백질들은 매우 큰 인력에 의해 정지상에 결합되어 분리관을 통과하지 못하기도 한다.

➡ 다만 인력이 너무 강하면[→ 정지상과 전하가 다르고, 전하량은 매우 큰 경우]에 정지상과 결합되어 분리관을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 문단 3 아미노산의 등전점

1) 단백질의 전하와 전하량은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미노산**은 중심 탄소 원자에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 그리고 종류에 따라 다른 **결사슬**이 결합되어 있는 분자이다.

➡ IEC를 통한 단백질의 분리가 가능하려면 단백질마다 '전하, 전하량'이 달라야 한다. 단백질의 전하, 전하량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인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에 달려 있다.

2) 단백질이 이동상에 녹아 있을 때에는 아미노산의 **아미노기**가 **수소 양이온**과 결합하는 **환원**이나 **카르복실기**가 수소 양이온을 내어놓는 **산화**가 일어날 수 있다. 산화나 환원이 각각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는 **이동상의 pH값**이 영향을 미친다. **pH값**은 수소 양이온

의 농도에 반비례하는 값이므로, 이동상의 pH값이 작을수록 산화보다 환원이 쉽게 일어나므로 아미노산이 양전하를 띠기 쉬워진다.

➡ 아미노산은 '이동상'에서 산화될 수도 있고 환원될 수도 있다. 산화, 환원 중 무엇이 일어나기 쉬운지는 '이동상'의 pH값에 달렸다.

☞ **백락 짚기** 이와 관련하여 'pH값과 수소 양이온의 농도' 간의 관계가 주어졌으니 정리하자. 개념들 간의 관계는 글의 이해에도 필수적이지만, 나중에 문제를 풀 때에도 매우 유용하므로 의식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pH값 ↓ ⇨ 수소 양이온의 농도 ↑

☞ **주목** 이동상의 수소 양이온의 농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아미노기가 수소 양이온과 결합하기도 쉬워진다. 그래서 '환원'이 더 쉽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아미노산은 '양전하'를 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동상의 pH값 ↓ ⇨ 이동상의 수소 양이온의 농도 ↑ ⇨ 아미노기의 환원 ↑ ⇨ 아미노산이 양전하를 띠기 쉬워짐

이동상의 pH값 ↑ ⇨ 이동상의 수소 양이온의 농도 ↓ ⇨ 카르복실기의 산화 ↑ ⇨ 아미노산이 음전하를 띠기 쉬워짐

3) 특정 pH값에서는 산화와 환원에 의해 아미노산이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되는데, 이를 '**아미노산의 등전점**'이라 한다. 아미노산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등전점을 가진다.

➡ 특정 pH값에서는 아미노기의 환원과 카르복실기의 산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아미노산에 양전하와 음전하가 함께 생겨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것이다.

☞ **주목** 이 '특정 pH값'은 결국, 이동상의 pH값이 낮아서 환원되기 쉬운 정도도 아니고, 이동상의 pH값이 높아서 산화되기 쉬운 정도도 아닌, 딱 중앙값이겠다. 이를 가리켜 '아미노산의 등전점'이라 한다. 이를 기점으로, 그보다 낮은 pH값에서는 환원이, 그보다 높은 pH값에서는 산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 이동상의 pH값 < 아미노산의 등전점 : 환원 ⇨ 양전하
- 이동상의 pH값 = 아미노산의 등전점 : 전기적 중성
- 이동상의 pH값 > 아미노산의 등전점 : 산화 ⇨ 음전하

➡ 아미노산의 종류마다 등전점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pH값의 이동상에서 아미노산은 음전하를 띠거나, 양전하를 띤다. 그래서 단백질마다 각기 다른 '전하, 전하량'을 갖게 되고[문단3-1], 그래서 IEC로 단백질들을 분리해 낼 수 있는 것이다[문단1].

#### 문단 4 단백질의 등전점

1)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한 줄로 길게 결합된 **폴리펩티드**가 하나 이상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구조를 띤다. 그래서 그 바깥쪽 부분을 구성하면서 이동상과 접하는 아미노산들의 전하 분포에 따라 외부와 상호 작용 하는 전하와 전하량이 결정된다.

➡ 단백질을 구성하는 모든 '아미노산'이 정지상과 상호 작용 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상 바깥쪽에 놓이면서, 이동상과 접하는[→ 이동상과 접하지 않고서는 그 pH값의 영향을 받아 전하를 띠지 못할 것이다.] 아미노산에 의해서만 '단백질의 전하, 전하량'이 정해진다.

2) 그 전하가 중성이 되는 pH값을 '**단백질의 등전점**'이라 하는데, 이동상의 pH값과 단백질의 등전점 간의 차이가 클수록 단백질의 전하량이 커서 정지상과 더 강하게 상호 작용 한다. 정지상이 단백질을 더 강하게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것이다.

➡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결국 '아미노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전점보다 낮은 pH값에서는 양전하를, 특정 pH값에서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등전점보다 높은 pH값에서는 음전하를 띠겠다. 등전점은 산화나 환원에 의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면, 그보다 낮은 pH값에서는 환원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보다 높은 pH값에서는 산화가 더 많이 일어나는 셈이다.

- 이동상의 pH값 < 단백질의 등전점 : 양전하
- 이동상의 pH값 = 단백질의 등전점 : 전기적 중성
- 이동상의 pH값 > 단백질의 등전점 : 음전하

☞ **주목** 그런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여럿이다. 즉 양전하를 띠는 아미노산도 여럿일 테고, 음전하를 띠는 아미노산도 여럿일 테다. 즉 '전하량'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동상의 pH값과 단백질의 등전점 간의 차이가 클수록, '단백질의 전하량'도 커진다. 앞서 정리한 개념들 간의 관계와 연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문단2-2].

이동상의 pH값에 따라 단백질의 전하가 정해짐 ⇨ 정지상과 전하가 같음/다름 ⇨ 단백질의 이동 속도 ↑ / ↓

이동상의 pH값과 단백질의 등전점 차이 ↑ ⇨ 단백질의 전하량 ↑ ⇨ 단백질의 이동 속도 변화량 ↑

#### 문단 5 카운터 이온

1) 때로는 정지상에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결합되어 분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그럴 때에는 '카운터 이온'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분리한다.

➡ IEC의 목적을 떠올리자. '특정한 단백질을 분리하는 것이 목적인데[문단1], 정지상과의 결합에 의해 제대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된다[문단2-3].

2) **카운터 이온**은 정지상에 결합한 단백질보다 정지상에 더 잘 결합하는 물질이므로, 이들이 정지상에 결합함에 따라 단백질이 분리되는 것이다. 이동상에서 카운터 이온의 농도를 서서히 높이면, 전하량이 작아서 결합 강도가 약한 단백질부터 순차적으로 분리되어 분리관을 빠져나온다.

➡ '카운터 이온'은 이미 정지상과 결합한 단백질을 밀어내고, 정지상과 결합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면 분리가 가능하다.

➡ 이때 '결합 강도가 가장 약한 단백질', 즉 정지상과의 인력이 가장 약한 단백질 → 전하량이 가장 작은 단백질부터 분리된다는 점도 챙겨 두자.

#### <보기> 분석

#### <보기> 문단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여 단백질 A와 B의 혼합물에서 두 단백질을 분리하기 위한 실험 (가)와 (나)를 진행했다. 이동상의 pH값과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단, 정지상으로는 음전하를 띠는 물질이 사용됨.)

| 실험  | 이동상의 pH값 | 실험 결과             |
|-----|----------|-------------------|
| (가) | 4        | 분리관을 통과하는 단백질이 없음 |
| (나) | 8        | 두 단백질 모두 분리관을 통과함 |

❖ 맥락 짚기 각각의 실험 결과가 주어졌으므로 이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동상의 pH값'이 주어졌으므로, 그에 비해 단백질 A, B의 등전점이 어떠하였기에, 각각의 실험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동상의 pH값과 단백질의 등전점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문단4-2].

- 이동상의 pH값 < 단백질의 등전점 : 양전하
- 이동상의 pH값 = 단백질의 등전점 : 전기적 중성
- 이동상의 pH값 > 단백질의 등전점 : 음전하

➡ (가)에서 A, B 모두 분리관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정지상과의 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정지상은 음전하를 띠므로, 인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A, B 모두 양전하를 띠어야 한다[문단2-2]. 즉 A, B의 등전점은 모두 (가)의 4보다 크다.

∴ 반면 (나)에서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 A, B에 인력만 작용한다고 볼 수도 없고, 척력만 작용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A, B가 어떤 전하를 띠는지 예측할 수 없다. 가령 A가 양전하를 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인력'이 발생하더라도, 전하량이 너무 크지만 않으면 정지상과 결합하지 않고, 분리관을 천천히 통과할 뿐이기 때문이다[문단2-2]. A가 양전하를 띠는 것은 그 등전점이 (나)의 8보다 크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경우가 가능하므로, ③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정지상과 전하가 같음 ⇒ 단백질의 이동 속도 ↓  
정지상과 전하가 다름 ⇒ 단백질의 이동 속도 ↑

단백질의 전하량 ↑ ⇒ 단백질의 이동 속도 변화량 ↑

## [12~17] 인문 사회 통합

# 조선 시대의 정소 기한과 오늘날의 권리 소멸 제도

## 자문 평가

조선 시대의 '정소 기한'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법 제도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통합 지문이다. 정보량이 많아 보이지만 (가)에서 '정소 기한'의 취지를 이해하고, (나)에서 '소멸 시효, 제척 기간'을 구분하여 이해하기만 하면 나머지 정보들은 알아서 정리된다.

## 키워드

### (가) 인문 · 사회 - 과한법 - 정소 기한

시효, 제소 기간, 과한법, 정소 기한, 전택조, 물청, 대환, 수교, 소환

### (나) 사회 - 법학 - 소멸 시효, 제척 기간

소멸 시효, 권리의 소멸, 제척 기간, 중환, 이익의 포기, 기산점, 소급효, 장래효

## (가) 문단 1 시효 제도와 과한법

1) **시효**란 어떤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될 때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인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시효는 어떤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되었다면, 그것을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그 권리관계의 진실성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2) 오늘날의 시효 제도는 소송의 남발을 막는 효과를 낳는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 기간**이 시효에 의해 한정되기 때문이다.

➡ '시효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계속된 어떤 사실 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므로, 소송의 남발을 막는다. 시효가 완성되면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3) 이와 유사하게 조선 시대에서는 소송을 줄이기 위한 몇몇 단송 정책이 실패하자 그 일환으로 **과한법(過限法)**이 마련되었다. **과한법**은 기한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들을 가리킨다.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오늘날의 시효 제도와 유사한 역할을 한 '과한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두었다는 점에서 '시효 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어 보인다.

## (가) 문단 2 전택조의 정소 기한

1) 과한법에는 관청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에 관한 규정인 **정소 기한**이 담겨 있다. 『경국대전』(1485)에서의 토지와 가옥, 노비에 관한 과한법 조항인 **전택조**에 따르면 정소 기한은 5년으로, 그 후에는 물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청**한다는 것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뜻한다.

➡ '정소 기한'은 오늘날의 제소 기간과 유사한 개념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말한다. '전택조'는 토지와 가옥, 노비에 관한 소송에 정소 기한을 정해 둔 과한법 조항이다.

2) 다만 남의 토지나 가옥을 가로챈 경우, 소송이 개시되었으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분할해야 할 상속 재산을 홀로 차지한 경우, 소작인이 토지를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인이 가옥을 비워 주지 않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되어 정소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 **맥락 짚기** 법 관련 지문에서는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원칙에 따르되, 어떤 조건을 갖추면 예외가 허용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여기서는 특정 유형의 사건들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정소 기한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 원칙 : 토지와 가옥, 노비와 관련한 사항의 정소 기한은 5년이다.
- 예외 : 다음의 경우 정소 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남의 토지나 가옥을 가로챈 경우
  - 소송이 개시되었으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 분할해야 할 상속 재산을 홀로 차지한 경우
  - 소작인이 토지를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인이 가옥을 비워 주지 않는 경우

### (가)문단 3 정소 기한의 변화

1) 그런데 도망간 노비를 되돌리려는 노비 추쇄의 정소 기한조차 5년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짧다는 불만이 늘었다. 그래서 조상 때에 도망간 사노비의 경우 전택조에서의 상속 재산에 관한 예외 규정에 포함시켜 정소 기한을 면해 주기도 하였으나, 이로 인해 관련 소송이 적체되어 혼란이 격해지는 일이 벌어졌다.

➡ 그런데 현실적으로 5년은 너무 짧다는 불만들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아예 '조상 때에 도망간 사노비'라는 특정한 경우도 예외로 포함시켰지만[문단 2-2], 이번에는 정소 기한이 제한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소송들이 지나치게 쌓이는 문제가 생겼다.

☞ **주목** 즉 정소 기한이 너무 짧아도 안 되지만, 정소 기한이 없어도 '물청'할 수가 없어서 관련 소송이 지나치게 쌓이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소 기한이 너무 짧다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5년보다 넉넉한 정소 기한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

2) 결국 노비에 관한 정소 기한을 늘리는 논의가 이어지다가 중종 10년(1515)의 수교를 통해 60년으로 정하고, 이 기한을 대한(大限)이라 칭하였다. 수교는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을 말한다. 이어 이 기한이 길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중종 13년(1518)의 수교에서 공노비에 대해서만 소한(小限)이라 불리는 30년으로 다시 조정하였다.

➡ 1)에서 제기된 문제에 따라 정소 기한이 조정되었다. 종합하면 '공노비가 아닌 노비'에 관한 정소 기한은 '대한', '공노비'에 관한 정소 기한은 '소한'으로 조정되었다.

3) 추후 이들 수교의 규정들은 『대전후속록』(1543)을 거쳐 『속대전』(1746)에 편입되었고, 그에 따라 대한의 경우 토지와 가옥에 대한 예외 규정들에도 적용되었다.

☞ **주목** '수교'가 『속대전』에 편입되면서, '공노비가 아닌 노비'에 관한 정소 기한은 '토지와 가옥에 관한 예외 규정'들에도 적용되었다. 즉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원칙 : 토지와 가옥, 노비와 관련한 사항의 정소 기한은 5년이다.
- 예외 1 : 다음의 경우 정소 기한은 소한[→ 30년]이다.
  - 공노비와 관련한 사항
- 예외 2 : 다음의 경우 정소 기한은 대한[→ 60년]이다.
  - 남의 토지나 가옥을 가로챈 경우
  - 소송이 개시되었으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 분할해야 할 상속 재산을 홀로 차지한 경우
  - 소작인이 토지를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인이 가옥을 비워 주지 않는 경우
  - 공노비가 아닌 노비와 관련한 사항

### (가)문단 4 마무리

오늘날의 시효 제도는 권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권리 귀속의 주체를 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입법의 취지가 있다. 조선 시대의 정소 기한 역시 그러한 취지가 없던 것은 아니나, 사회 혼란을 줄이면서도 관청의 사법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였다.

➡ 오늘날의 시효 제도와 조선 시대의 정소 기한의 성격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다.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 공통점                                  | 차이점                                 |
|--------------------------------------|-------------------------------------|
| 국민의 권리 구제에 취지가 있음<br>소송의 남발을 막을 수 있음 | '정소 기한'은 사법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위한 목적이 더 강함 |

### (나)문단 1 소멸 시효와 제척 기간

1) 민법에 규정된 소멸 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계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그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측면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따라 권리 행사 태만에 대해 제재하는 측면을 주된 의의로 지닌다.

➡ '소멸 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시효의 일종으로 [(가)의 문단 1-1], 결국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면 된다.

| 시효                                          | 소멸 시효                                               |
|---------------------------------------------|-----------------------------------------------------|
| 어떤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한다.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될 때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한다. |

2) 조선 시대의 정소 기한 역시 이 두 측면의 의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유사한데, 구체적으로는 소멸 시효에 비해 제척 기간에 더 가깝다. 제척 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대해 법률이 미리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으로, 그 기간 후에는 권리가 소멸한다.

☞ **맥락 짚기** 통합 지문에서는 (나)를 읽으면서 (가)의 내용을 의식적으로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 (가)의 '정소 기한'의 개념을 오늘날의 '소멸 시효, 제척 기간'과 비교하고 있다. 즉 '소멸 시효, 제척 기간'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왜 '정소 기한'은 '제척 기간'에 더 가깝다는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나)의 관건이다.

※※ 주목 '제척 기간'을 '소멸 시효'와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소멸 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때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를 조건으로 한다. 반면 '제척 기간'은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해당 권리가 존속한다는 것으로, '권리의 행사 여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 소멸 시효                                               | 제척 기간                                              |
|-----------------------------------------------------|----------------------------------------------------|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될 때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한다. | 일정한 권리에 대해 법률이 미리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으로, 그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한다. |

▶ 바로 이 점에서 '정소 기한'이 '제척 기간'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다. '정소 기한' 또한 권리의 행사 여부와는 무관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기 때문이다(가)의 문단2~1).

## (나) 문단 2 소멸 시효와 제척 기간의 차이점

1) 소멸 시효의 조문에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와 같이 '시효'라는 표현이 포함되며, 제척 기간의 조문은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와 같이 보통 '소멸한다'라는 표현이 명시된다.

▶ '소멸 시효'와 '제척 기간'의 조문의 표현상 차이점이다.

2) 소멸 시효와 제척 기간은 일정 기간 후에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소멸 시효의 경우 권리 불행사의 사실 상태가 지속되는지를 보고 그 시효가 완성되면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며, 그와 달리 제척 기간의 경우 단순히 존속 기간의 경과만을 따져 권리 소멸의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그래서 소멸 시효는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조치,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중단되지만 제척 기간은 중단이 있을 수 없다.

▶ 의식적으로 두 개념을 구분해서 읽어 내야만 한다. '소멸 시효'는 완성되면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반면 '제척 기간'은 완성되면 '권리 소멸의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 주목 이렇듯 '소멸 시효'는 완성되어도 권리 소멸의 법률관계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소멸 시효'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권리 행사, 즉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조치, 채무자의 승인' 등이 확인될 때 중단되는 것이다.

▶ 반면 '제척 기간'은 권리의 행사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단될 수도 없다. 그저 그 기간이 경과하여 완성되면 해당 권리의 소멸이 확정된다.

|        | 소멸 시효                    | 제척 기간            |
|--------|--------------------------|------------------|
| 완성     | 권리 소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됨 | 권리 소멸의 법률관계가 확정됨 |
| 중단 가능성 | ○                        | ×                |

3) 또한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얻는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나, 제척 기간의 경우 권리의 당연한 소멸로 보아 **이익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 소멸 시효의 완성의 경우 이익의 포기가 인정되지만, 제척 기간의 경우에는 이익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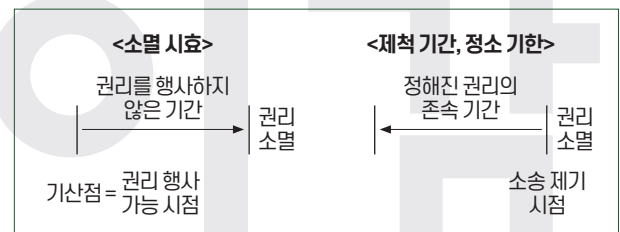
▶ 여기서 '이익을 얻는 자'는 가령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해당한다.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채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해당 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제척 기간의 경우 '권리의 소멸'이 확정되므로, 이러한 이익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              | 소멸 시효                    | 제척 기간            |
|--------------|--------------------------|------------------|
| 완성           | 권리 소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됨 | 권리 소멸의 법률관계가 확정됨 |
| 중단 가능성       | ○                        | ×                |
| 이익의 포기 인정 여부 | ○                        | ×                |

## (나) 문단 3 기산점의 유무

정소 기한은 중단이나 이익의 포기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척 기간에 더 가깝다. 특히 정소 기한은 소멸 시효와 달리 **기산점**이 없다. **기산점**이란 기한을 산정하는 시작점으로, 민법에서 소멸 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로 규정되어 있다.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한,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해도 기한 산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정소 기한은 **소송의 제기**가 있으면 그때부터 기간을 역산한다.

▶ '기산점'을 통해서도 '소멸 시효, 제척 기간'을 구분할 수 있다. 소멸 시효는 '기산점'을 갖지만, 정소 기한은 그렇지 않다(→ 정소 기한은 제척 기간에 더 가깝으므로, 제척 기간도 기산점을 갖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정소 기한'의 경우 소송의 제기가 있으면 그때부터 기한을 역산하여, 해당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지게 되는 것이다. 가령 정소 기한이 30년이라면, 해당 사건이 30년 이내에 발생한 것인지를 따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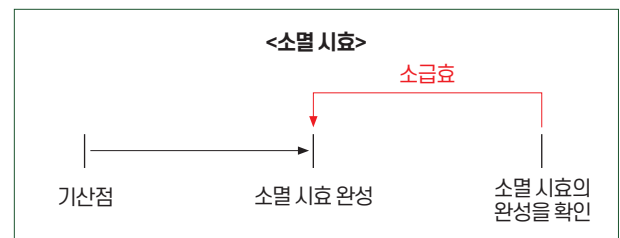


## (나) 문단 4 소급효의 인정 여부

1) 소멸 시효는 기산점이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에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당시까지 소급하여 권리를 소멸하는 효과인 **소급효**를 인정하지만, 제척 기간이나 정소 기한은 판결 시점부터의 미래의 효과인 **장래효**만 인정한다.

▶ 기산점으로부터 도출되는 개념들이다.

※※ 주목 '소급효'는 소멸 시효가 과거에 이미 완성되었다면, 완성된 시점부터 소급하여 권리를 소멸하는 효과를 말한다. 즉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때'라는 '기산점'이 있으므로, 그것이 언제 '완성'되었는지도 알 수 있어서 '소급효'가 가능한 것이다. 가령 소멸 시효가 10년 전에 완성되었음을 지금 확인하였다고 하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10년 전까지로 소급하여 '권리의 소멸'을 인정해 줄 수 있다.



▶ 반면 '제척 기간, 정소 기한'은 '기산점'이 없으므로, 그것이 과거 어느 시점에 이미 '완성'되었는지를 따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의 완성이 확인된 지금

부터 미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지[→ 장래효만 갖지], 그 과거에 대해서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즉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 소멸 시효                    | 제척 기간[→ 정소 기한도 같은 성격을 가짐] |
|--------------|--------------------------|---------------------------|
| 완성           | 권리 소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됨 | 권리 소멸의 법률관계가 확정됨          |
| 중단 가능성       | ○                        | ×                         |
| 이익의 포기 인정 여부 | ○                        | ×                         |
| 기산점의 존재      | ○                        | ×                         |
| 소급효의 인정 여부   | ○                        | ×                         |

2) 종합해 보면 정소 기한은 시효 제도의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본질이 제척 기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재판상의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점 역시 정소 기한이 제척 기간에 가까운 면이다.

➡ 결론 '정소 기한'은 취지의 측면에서는 '소멸 시효'와 유사하지만, 그 법적 성격은 '제척 기간'에 훨씬 가깝다는 것이다.

## <보기> 분석

### <보기> 문단

1) 조선 시대에 원고 갑은 피고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에 따르면 조부가 살아 있을 때에 일부 토지에 대한 관리를 친척인 을에게 위임하였었는데, 을은 갑의 조부에게 알리지 않은 채 토지 전체를 자신의 토지로 삼았다. 갑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해당 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을은 갑이 그 토지 근처에 살아왔으면서도 이미 70년이 넘어 이를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관은 당시의 법 규범에 따라 판결을 내렸고 그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맥락 짚기 조선 시대의 민사 소송을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 (가)에서 제시된 정소 기한의 변천과 (나)에서 제시된 정소 기한과 소멸 시효, 그리고 제척 기간과의 차이점 및 공통점을 <보기> 사례의 각 부분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토지 상속분에 대한 소송으로, 전택조의 예외 사항 중 '분할해야 할 상속 재산을 홀로 차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재판관이 전택조의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면, 정소 기한을 두지 않아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대[(가)의 문단2-2].

➡ 반면 '수교'가 『속대전』에 편입된 후의 법조문을 적용한다면 토지와 가옥에 대한 예외 규정에도 '대한'이 적용되므로, 6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소멸되어 갑의 소송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가)의 문단3-3].

- 원칙 : 토지와 가옥, 노비와 관련한 사항의 정소 기한은 5년이다.
- 예외 1 : 다음의 경우 정소 기한은 소한[→ 30년]이다.
  - 공노비와 관련한 사항
- 예외 2 : 다음의 경우 정소 기한은 대한[→ 60년]이다.
  - 남의 토지나 가옥을 가로챈 경우
  - 소송이 개시되었으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 분할해야 할 상속 재산을 홀로 차지한 경우
  - 소작인이 토지를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인이 가옥을 비워 주지 않는 경우
  - 공노비가 아닌 노비와 관련한 사항

2) “피고는 70년 동안 추심하지 않은 물건을 조부의 상속분이라 칭하며 반환 청구를 하는 원고의 행위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남의 토지나 가옥을 가로챈 사안에는 기한이 없다’는 조문이 법전에 있다.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물려받은 토지나 노비를 버려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해당 재판관은 을의 주장에 대해 정소 기한이 없다고 보고 토지를 갑에게 되돌려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통해 당시는 '수교'가 『속대전』에 편입되기 전으로, 전택조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던 시기임을 알 수 있다[(가)의 문단2-2].

- 원칙 : 토지와 가옥, 노비와 관련한 사항의 정소 기한은 5년이다.
- 예외 : 다음의 경우 정소 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남의 토지나 가옥을 가로챈 경우
  - 소송이 개시되었으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 분할해야 할 상속 재산을 홀로 차지한 경우
  - 소작인이 토지를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인이 가옥을 비워 주지 않는 경우

∴ 정소 기한은 그 성격이 '제척 기간'과 같아서 기산점을 갖지 않는다. 다시 말해 '소멸 시효'와 달리 기산점으로부터 언제 그것이 완성되었는지를 알 수 없어서,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기간을 역산할 수만 있다[(나)의 문단3]. 따라서 '을이 토지를 자신의 것으로 삼은 때부터'를 기산점으로 삼는 ⑥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 소멸 시효                    | 제척 기간[→ 정소 기한도 같은 성격을 가짐] |
|--------------|--------------------------|---------------------------|
| 완성           | 권리 소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됨 | 권리 소멸의 법률관계가 확정됨          |
| 중단 가능성       | ○                        | ×                         |
| 이익의 포기 인정 여부 | ○                        | ×                         |
| 기산점의 존재      | ○                        | ×                         |
| 소급효의 인정 여부   | ○                        | ×                         |

[22~26] 현대시

## (나) 「신의 방」

— 김선우 —

### 작품 평가

변소 안에 돼지를 기르는 제주도의 독특한 공간인 '통시'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순환과 이에 담긴 생태적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친근한 구어체를 사용한 산문시로서, 이야기를 하듯이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제 1연 '통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생명의 순환

이런 돼지[→ 제주도의 검은 돼지]가 살았대지요 반들거리는 검은 털에 날렵한 주둥이를 가진, 유난히 흙의 온기를 좋아하여 흙이랑 노는 일을 제일로 즐거워했다는군요

▶ '이런 돼지'의 외양과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검은 돼지가 좋하다는 '흙의 온기'는 인간의 문명에 물들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환기한다. '흙이랑 노는 일을 제일로 즐거워했다'는 것에서 생명력 넘치는 검은 돼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기른다는 것이 실은 서로 길드는 것이어서

▶ 검은 돼지와 이를 기르는 사람들의 관계를 '서로 길드는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 인간이 일반적으로 검은 돼지를 기르는 것이라 여기지 않고, 인간과 돼지가 함께하며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것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 지방 사람들[→ 검은 돼지를 기르는 제주도의 사람들]은 통시라는 거처를 마련했대지요 인간의 배변 장소와 돼지우리가 함께 있는 아주 재미난 방인 셈인데요 지붕을 덮지 않은 널찍한 호를 파고 지푸라기 조금 깔아 준 방 안에서 이 짐승은 눈비 맞고 흙과 똥과 똥굴면서 비바람 햇별을 고스란히 살 속에 아로새기게 되었다는데요

▶ 제주 사람들이 검은 돼지의 거처로 만든 '통시'의 형태를 묘사하고 있다.  
▶ '통시'에서 '눈비 맞고 흙과 똥과 똥굴면서 비바람 햇별을 고스란히' 맞으며 사는 검은 돼지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음식물 찌꺼기며 설거지물까지 버릴 것 없이 모아 둔 큰 독 속에서 한때 빛나던 것들이 제 힘으로 다시 빛날 때[→ 쓰임을 다한 것들이 다시 생명력을 얻음] 발효한 이 먹이를 돼지가 먹고 돼지의 배설물은 보리밭 거름으로 이쁜 보리들을 길렀다는데요

▶ 사람이 먹고 남은 것들을 모아 발효시킨 것들을 검은 돼지가 먹고, 검은 돼지의 배설물은 보리밭의 거름으로 쓰여 사람이 먹음 보리를 길러 내는 과정에서 생태계의 순환을 확인할 수 있다.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그 어느 것도 허투루 버려지지 않고, 생명체들이 서로의 생장을 도우며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이 짐승의 주식이 사람의 똥이었던 것은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 있는 것에게 바쳐진다는 의미]이라 행여 남아 있을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려운 때문이 아니었는지 몰라

▶ '통시'는 인간의 배변 장소와 돼지우리가 함께 있는 곳이므로, 검은 돼지의 주식은 자연히 사람의 똥이었을 것이다. 사람의 똥 또한 사람의 생명 활동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거기에는 생명의 온기가 남아 있다. 화자는 이러한 사람의 배설물을 검은 돼지의 먹이로 준 것에는 한 생명의 온기가 다른 생명을 위해 쓰이며 그 온기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이라 여긴다. 생명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는 배설물이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되었을 것이다. 즉, 화자는 생명의 온기를 하찮게 여기고 나아가 생명 자체도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제 2연 신이 거주하는 방으로 여겨졌던 생명의 공간 '통시'

나라의 높은 분[→ 통시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기에 미개하여 시멘트[→ 흙과 대비되는 소재로써 물질문명을 상징함] 네 포대씩 무상 지급한 때가 있었다는데요 문명국의 지표인 변소를 개량하라 다그쳤다는데요

▶ '통시'는 제주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와 경험을 통해 의미가 부여된 독특한 장소이다. 이들의 문화와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통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인, 특히 물질문명에 익숙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에겐 '통시'는 더러운 똥을 돼지에게 먹여 기르는 미개한 공간으로 여겨질 뿐이다.

흔적이나마 통시가 아직 남아 내 몸 속의 방을 향해 손 내밀어 주는 것은, 똥 누고 먹는 일이 한가지로 행해지는 그곳을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 여긴[→ 생명을 길러 내는 신성한 장소로 여김] 하늘 가까운 섬사람들[→ 생명을 중시하며 신에 대한 경외심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나라의 높은 분'으로 인해 '통시'는 사라지게 되었지만, 화자는 그 흔적을 통해 '통시'에 담긴 생태적 가치관을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몸 또한 생명의 공간임을 깨닫고 있다.

이감

## — 수록 지문 평가

이 작품은 작가가 연산군 재위 중 사회(士禍)에 연루되어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느낀 원통함을 하소연한 것이다. 제목에 쓰인 '만분(萬憤, 온갖 분하고 괴로운 마음)'이라는 말처럼, 정치적 번고를 맞아 유배에 처한 작가가 품은 복잡다단한 심경을 호소하고 있다.

천지 끝이 없고 어안(魚雁, 물고기와 기러기. 잉어와 기러기가 편지를 날랐다는 고사가 있음)이 무정하니

▶ '천지 끝이 없고'는 끝없는 천지의 이쪽과 저쪽에 놓여 서로 멀리 헤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뒤의 흐름으로 볼 때, 임과 화자 사이의 막막한 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안이 무정하니'는 임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소망과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 참고 '기러기'는 고전시가나 고전소설에서 흔히 소식을 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새이다. 이 부분에서는 기러기가 '무정하게도' 소식을 전해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려짐으로써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을 부각하고 있다.

옥 같은 얼굴을 그리다가 말려지고

▶ '옥 같은 얼굴'은 임[→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다가 말겠구나'라는 말은 '기러기와 물고기가 무정하여 소식을 전해 주지 않으니'] 소식을 전하러 다시 만나지 못하고 임을 그리워만 하다가 끝나겠다는 한탄을 나타낸다.

매화[→ 임에 대한 화자의 순결하고 곧은 마음]나 보내고자 역로(驛路)[→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 여기서는 임이 있는 곳과 화자가 있는 곳을 연결하는 길]를 바라보니

▶ '매화'를 보내고 싶어 '역로'를 바라보는 화자의 행위를 통해, 유배지에서도 변치 않는 자신의 마음을 임에게 전하고 싶은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들보 비춘 밝은 달은 예전 보던 낮빛[→ 임의 얼굴]인 듯

▶ '밝은 달'을 보며 임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다.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드러난다.

양춘(陽春)(= 따뜻한 봄)을 언제 볼고 눈비를 혼자 맞아

▶ 임과 다시 만나는 것을 따뜻한 봄을 맞는 것에, 홀로 임을 그리워하며 지내야 하는 현실을 '눈비를 혼자 맞'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벽해(碧海) 넓은 가에 뉘조차 흠어지니

▶ 질푸른 바다가 넓게 펼쳐진 곳에 '뉘조차 흠어진다'는 표현을 통해, 임과의 아득한 거리를 느끼며 내면의 고통을 겪는 화자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나의 긴 소매를 늘 위하여 적시는고

▶ '긴 소매'를 적신다는 표현에서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화자가 흘리는 눈물은 당연히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늘 위하여 적시는고'라며 의문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임과 화자 사이의 막막한 거리가 환기된다.

태상 칠위분이 옥진군자(玉眞君子, 천상 세계의 신선) 명(命)이시니

하늘 위 누각에서 피리를 올리시며

지하 북풍에 죽을 운명 벗기실까

▶ 자신이 죽고 사는 것이 운명을 주관하는 '옥진군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암울한 자신의 처지를 '지하'에서 혹독한 '북풍'을 맞으며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것으로 표현하며, '벗기실까'를 통해 이러한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죽기도 운명이요 살기도 하늘인데

진채지액(陳蔡之厄,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의 땅에서 병사들에게 잡혀 곤욕

을 겪은 일)을 성인도 못 면하니

죄 없이 잡힌 것을 군자인들 어이하리

▶ 운명에 대한 체념적 태도와 함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죽고 사는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제시한 다음 '성인'도 '진채지액'을 피하지 못했으니 자신과 같은 사람이 닥쳐오는 화를 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특히 '죄 없이 잡힌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억울하게 유배형에 처해진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오월 서리가 눈물로 생기는 듯

삼 년 가뭄도 원통함으로 일어나네

▶ 유사한 의미의 구절을 열거하여 자신이 느끼는 울분을 강조하고 있다.

▶ 참고 '오월 서리가 눈물로 생기는 듯'은 전국 시대에 추연이라는 사람이 왕을 충성으로 섬겼는데, 주변의 참소를 들은 왕이 그를 옥에 가두자 오월 여름에 서리가 내렸다는 고사에서 비롯한 표현이다. '삼 년 가뭄도 원통함으로 일어나네'는 중국 동해에 살던 한 여인이 억울한 죄명으로 죽자 그곳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고사에서 비롯한 표현이다.

역경에 빠진 사람 고금에 한둘이며

늙은 신하에게 설운 일도 많고 많다

▶ '고금'을 돌아보며 억울하게 화를 입었던 무수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이다. '설운 일'은 정쟁에 휩쓸려 자신이 억울하게 유배를 오게 된 일을, '많고 많다'는 울분의 크기를 환기한다.

하늘과 땅 병이 들어 혼돈(混沌,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지 않은 순박한 상태)

이 죽은 후에

하늘이 침울한 듯 관색성(貫索星, 감옥을 뜻하는 별자리. 여기서는 유배를 뜻함)이 비치는 듯

▶ 부정적 정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하늘과 땅'이 병이 들고 '혼돈'이 죽었다는 것은 하늘의 섭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하늘이 '침울한 듯' 어두워지고 자신이 유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라 걱정애 원한만 쌓였으니

▶ 현실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토로하는 부분이다. 유배지에서도 홀로 나라 걱정을 해 보지만 부정적 정치 현실을 생각하면 원한만 쌓인다는 것이다.

차라리 애꾸눈 말같이 눈 감고 지내고저

▶ 너무 울분이 커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보이도록 눈을 감은 채 지내고 싶을 정도라는 말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환멸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중략)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님의 집 창밖에 외나무 매화 되어

눈 속에 혼자 피어 베갯머리에 시드는 듯

▶ '님의 집 창밖에' 서 있는 한 그루 '매화'가 되고 싶다고 하며 임의 곁에 가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는다는 표현을 통해 '매화'가 화자의 한과 슬픔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외나무'와 '혼자'라는 시어에서 화자가 느끼는 고독감을 짐작할 수 있다.

달빛 아래 그림자가 님의 옷에 비치거든

가여운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까

▶ 자신이 '매화'가 되어 그림자가 '님의 옷'에 비치더라도 임이 '가여운' 자신을 보고 '네로다(= 너로구나)' 하며 반길지 확실하지 못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동풍이 유정(有情)하여 암향(暗香, 그윽이 풍기는 향기. 흔히 매화의 향기를 이룸)을 불어 올려

고결한 이내 생애 죽림(竹林, 여기서는 세상일을 잊고 은거하는 선비가 머무는 곳)에나 부치고저

▶ 한 그루 매화나무가 되는 상상에서 비롯된 비유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다. 임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해 낙담하던 화자는 은은하게 퍼지는 매화 향기처럼 '고결한 이내 생애'를 '죽림에나 부치고'자 하는 뜻을 드러낸다. '죽림'이 혼란스러운 세상일을 잊고 죽림에 모여 세월을 보낸 선비들인 '죽림칠현'을 연상시킨다는 점을 생각하면, '죽림'으로 향하려는 마음은 곧 세상일을 잊으려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빈 뉘대 빗기 들고 빈 배를 혼자 띄워

백구(白溝) 건너 저어 건덕궁(乾德宮, 신선들이 사는 궁궐)에 가고지고

▶ 일반적으로 고전시가에서 비어 있는 상태는 헛된 욕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 슬픔, 그리움 등의 감정으로 고뇌하던 화자가 세상과 거리를 둔 '죽림'으로 향하고자 한다는 앞 구절의 내용을 고려하면, '빈'을 반복하여 어지러운 감정이 모두 사라진 상태를 환기함으로써 고결하고 청정한 내면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 '빈 배를 혼자 띄워' 신선들이 사는 궁궐인 '건덕궁'으로 가고자 하는 모습에서 부정적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화자의 지향을 엿볼 수 있다.

☞ 참고 '백구'를 한강으로, '건덕궁'을 궁궐, 조정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건덕궁에 가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는 정치 현실로 복귀하려는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바로 앞 구절에서 자신의 고결한 생애를 '죽림'에 부치고자 하는 화자가 '빈 배'를 타고 향하는 곳이 '건덕궁'이라는 문맥을 생각하면 이 견해는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감